

[일련번호 : 11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인감 서면에 의한 변경신고 입증 증빙서류 확인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◆◆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◆◆동은 「인감증명법」,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인감증명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야 하며 다만 신고인이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하며, 이 경우는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거나,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,

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르면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(인감지)와 방문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.

또한 인감증명 사무편람 서면신고에 나와있는 입증서류로는 질병의 경우 ① 거동 불능 상태인 것과 ②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원확인서 및 의사진단서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인감 서면신고 시 대리인의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인감 서면신고 증빙소홀 내역

연번	신고일시	신고인 성명	보증인 성명	대리인 성명	지적사항
1	2024.07.10.				- 대리인 서명누락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인감 서면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

(주의)